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(인하공업전문대학)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(인하공업전문대학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인하공업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가

2021 년 월 일

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

감 사 배홍기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)

감 사 이서기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21년 월 일

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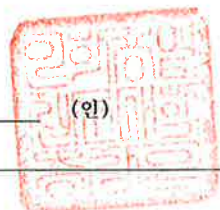
이 사 장 현 정택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21년 월 일

인하공업전문대학

총 장 진인주 (인)

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인하공업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피감사기관장 <u>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</u> 진 인 주 직인 (사인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이사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0회계연도 (2020년 3월 1일부터
2021년 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 서명
날인은 법인 : 사무국장, 대학교 : 재무처장, 부속병원 :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:
이사장·대학교: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
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
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.

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

인하공업전문대학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

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년 월 일

학교법인 정 석 인 하 학 원

감 사 배 흥 기

감 사 이 성 기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인하공업전문대학
 사무처장

성 이 기 호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교비회계·부속병원 회계)